거창 후 거창

더 큰 거창도약, 군민 행복시대

2019년도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계획

거 창 군

목 차

Ⅰ. **추진근거**----------1

Ⅱ. **추진방향**----------1

Ⅲ. **주민참여예산 범위 · 절차**----------2

Ⅳ. **운영계획**----------3

1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----------3

2 주민의견 수렴----------3

3 사업공모----------3

4 주민참여예산 홍보----------5

5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----------5

6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----------6

7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결과 공개----------6

2019년도 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계획

✦ 예산 과정에 군민참여 보장으로 예산의 투명성·민주성 증대
✦ 재정분권과 효과적 재원배분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주민만족도 제고

Ⅰ 추진근거

❍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(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)

❍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6조(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)

❍ 「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」 제6조(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)

Ⅱ 추진방향

□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다양한 참여방법과 절차 시행

❍ 설문조사, 인터넷 참여, 공모 사업 등 다채널 군민 참여 보장

❍ 직능단체 간담회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 청취

□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활성화

❍ 참여형 분과위원회 운영으로 참여 대상과 범위 확대

❍ 읍·면 단위 지역회의를 통한 자치 계획형 참여예산 사업 발굴

□ 군민 공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

❍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체계 강화

❍ 분과위원회 운영 등 주민참여 대표성 제고

Ⅲ 주민참여예산 범위 · 절차

□ 주민참여예산 범위

❍ 회계구분 : 2020년도 일반회계

❍ 예산범위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27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에 관한 권한 내
- 일반 사업예산과 민간이전(투자 사업에 한함) 예산

❍ 제외사업

✓ 관련 법령과, 조례에 위반되는 사업
✓ 경상적 경비, 인건비 등 법적·의무적 경비
✓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
✓ 국·도비 보조사업, 특정 단체·개인에 국한된 사업
✓ 매년 투자계획에 따라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(마을안길, 도로포장 등)
✓ 특정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
✓ 낭비적 성격의 행사·축제성 사업 등

□ 운영절차

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(3월) → 군민의견수렴 / 사업공모 / 간담회 등 (6~8월) → 예산사업 구체화 (타당성 검토) (8~9월) → 분과위원회 운영 등 주민참여예산사업 확정 (6~9월) → 제안사업 최종결정 (주민참여예산위원회) (10월) → 예산안 검토 (10월) → 예산안 제출 (군의회) (11월) → 예산안 확정 (군의회) (12월) → 사업시행 (익년도) → 개선사항 / 발전방안 도출 (익년도)

□ 운영방법

❍ 의견수렴 : 설문조사(설문지, 홈페이지), 공모사업, 간담회 등

❍ 사업검토 : 소관 부서, 분과위원회

❍ 사업확정 : 주민참여예산위원회

❍ 예산반영 : 최종 예산안 군의회 제출

❍ 사업추진 : 부서 직접시행 또는 민간이전

※ 읍·면 단위 지역주도 자치 계획형 사업은 민간이전경비(보조금) 제외

Ⅳ 운영계획

1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

- 운영시기 : 2019. 5.
- 대　　상 : 주민참여예산위원, 직능단체, 일반군민 등
- 교육인원 : 200명 정도
- 교육방법 : 집합교육, 권역별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
- 교육내용 :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와 참여 절차·방법 안내 등

2 주민의견 수렴

① 설문조사·인터넷 참여

- 기　　간 : 2019. 6. ~ 8.
- 대　　상 : 거창군민
- 설문방법 : 군 홈페이지(팝업존, 예산편성에 바란다), 설문지 작성(20문항)

② 간담회

- 기　　간 : 2019. 6. ~ 8.
- 대　　상 : 기관, 직능단체 등
- 추진방법 : 밀착 토의, 제안·건의 사항 등 의견 수렴

3 사업공모

① 군정비전 실현 정책사업 제안

- 기　　간 : 2019. 6. ~ 8.
- 대　　상 : 공무원, 일반 군민
- 사업규모 : 100억 이상, 50억 이상, 10억 이상 구분 시행
- 대상사업 : 군정발전 각종 프로젝트, 신규 사업, 시책 등

생활soc, 도시재생, 일자리 창출, 생활안전 인프라 구축, 복지시설 확충, 대형 개발 사업 등 ※ 국비, 도비, 민자 등 재원 조달 내용 포함 작성

- 응모방법 : 인터넷, 방문, 우편

② 읍·면 자치계획형 사업(지역회의)

❍ 공 모 명 : 지역주도형 자치 사업

❍ 기　　간 : 2019. 6. ~ 8.

❍ 사업규모 : 읍·면 6개소

❍ 사 업 비 : 3억원(1개소, 5천만원) / 전액 군비

❍ 사업신청 : 읍·면장(신청서, 지역협의체 구성 명단, 회의록 등)

-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회의에서 주민 주도로 사업 발굴
- 주민자치회, 이장협의회 등 10인 이상 대표 구성

※ 최소 10명 이상, 특정 성별 60% 미만

❍ 대상사업

구도심 활력 사업, 일자리 창출사업, 공동체 활성화 사업, 소규모 주민(읍·면) 숙원사업, 기타 제외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

❍ 제외사업

✓ 관련 법령과 조례에 위반되는 사업, 단년도 사업이 아닌 다년도 사업
✓ 국고보조사업, 경상적 경비, 인건비 등 법적의무 경비
✓ 특정단체·개인의 지원 또는 이익 등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
✓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의 운영비, 특정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
✓ 낭비적 성격의 행사·축제성 사업, 민간이전 경비(보조금)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

③ 주민제안사업

❍ 대　　상 : 거창군민

❍ 신청기간 : 정기접수(6~8월), 수시접수(인터넷 게시판 등)

❍ 신청방법 : 서면 신청, 군 홈페이지

❍ 대상사업 : 군민생활과 밀접한 사업

신규 군정 시책, 생활soc, 군정발전 제안사업, 참신한 아이디어 등

❍ 제외사업

✓ 법령에 위배되거나 조례상 위반되는 사업
✓ 국고보조사업, 경상적 경비, 인건비 등 법적의무 경비
✓ 특정단체·개인의 지원 또는 이익 등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
✓ 이미 설치 운영 중인 시설의 운영비, 특정 제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
✓ 낭비적 성격의 행사·축제성 사업, 민간이전 경비(보조금)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

4 주민참여예산 홍보

① 주민참여예산 게시판 운영

- 운영기간 : 연중
- 참여내용 : 예산편성과 운용, 예산절감 등 의견 제시 또는 건의
- 참여방법 : 군 홈페이지 > 주민참여예산제 > 예산편성에 바란다

② 예산참여 소통창구 개설

- 운영기간 : 2019. 6. ~ 10.
- 장　　소 : 군청 민원소통과 민원실, 읍·면 사무소
- 참여내용 : 공모사업, 주민제안, 의견제출 등

③ 홍보물 제작

- 제작내용 : 리플릿, 포스터, X-배너, 현수막 등
- 홍보기간 : 2019. 6. ~ 10.
- 내　　용 : 주민참여예산제도 참여 안내 등

④ 기타 홍보

- 홈페이지 팝업창
- 반상회보, 이장회보 등

5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

주민참여예산위원회	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
✓ 구성 : 10명(당연직 5명, 위촉직 5명) ✓ 임기 : 2년(2017.11.13.~2019.11.12.) ✓ 역할 : 주민참여예산사업 심의 ✓ 운영 : 2019. 10.	✓ 구성 : 6개 분과(부서장, 직능단체 대표 등) ✓ 역할 : 분과별 주민참여예산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, 사업 우선순위 등 ✓ 운영 : 2019. 6. ~ 9.

6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

❍ 범　　위 :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전반

❍ 운영시기 : 2019. 5. ~ 12.

❍ 추진방법 : 모니터링단 구성

- 주민참여예산위원, 재정공시심의위원, 보조금 심의위원 등

❍ 주요내용 :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등

- 의견수렴 과정의 적정성

- 공모사업, 제안사업 처리과정의 적절성 등

7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결과 공개

❍ 관련근거 :「거창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」제9조(결과 공개)

❍ 주민참여예산 의견수렴 결과 공개 : 2019. 12. / 군 홈페이지